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0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자 : 남인순 · 정태호 · 백승아
김 윤 · 허종식 · 강준현
서미화 · 박 정 · 박용갑
민병덕 · 박민규 · 김남희
백혜련 · 이춘석 · 김선민
윤건영 · 이주희 · 이수진
이학영 · 염태영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조제·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투약하거나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

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 발행한 처방전의 경우
2.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동물을 진료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환자 등 긴급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경우
3.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본인확인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종전의 제6호의2)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6의2.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 확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④ (생 략)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생 략)

<신 설>

그 자격을 확인하여 발행한

처방전의 경우

2.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

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

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

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

는 경우 환자(동물을 진료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의

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

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주

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명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③・④ (생 략) <신 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환자 등 긴급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경우 3.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0조의2(본인확인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 10. (생략) ② (생략)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0조제4항----- ----- -----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